자료

급여관련 회계처리

급여의 회계처리

01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갑근세와 4대보험은
모두 예수금 처리를 한다.

1 계속근로자의 급여

급여란 특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제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급여에는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여기서 임원급여란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에게 미리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 상여 등이 포함된다.

급 여

구 분		계정과목	공제방법
갑근세		갑근세예수금	간이세액표
주민세		주민세예수금	갑근세의 10%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예수금	(총급여-비과세급여)×4.5%를 각각 부담
	사업주 부담분	세금과공과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	고용보험예수금	총급여×0.45%를 각각 부담
	사업주 부담분	복리후생비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예수금	(총급여-비과세급여)×2.54%+[(총급여-비과세급여)×2.54%]×4.78%를 각각 부담
	사업주 부담분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분	없음	없음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산재보험요율

2 급여로 회계처리 가능한 사례

기본금(본봉), 상여금(특별상여 포함), 가족수당과 연차수당, 월차수당,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직무수당, 출납수당, 통근수당 등의 수당, 감독자급여, 강사료(내부 임직원), 임직원 대리운전비용 회사부담액

3 급여의 회계처리

구 분	계정과목
급여의 지급액	급여
급여의 미지급액	미지급급여(= 미지급비용)
급여의 가불액	가지급금 또는 선급급여
개업전 급여	급여
아르바이트생, 청소아줌마 등 일용직 급여	잡급
공장직원 급여	급여(제조원가)
급여이체시 수수료	지급수수료
급여반납시	자산수증이익

급여의 지급시 분개

예를 들어 급여 210만원(이중 10만원은 비과세급여)을 지급받고 공제대상가족 수가 1인인 경우 각종 공제액과 분개방법을 살펴보면

(1) 갑근세 및 주민세 공제액 – 간이세액표 적용

월급여액	세목	공제대상 가족의 수			
		1인	2인	3인	4인
2,000,000원 이상	갑근세	22,540	17,810	9,930	6,550
2,010,000원 미만	주민세	2,250	1,780	990	650

(2) 국민연금 – (총급여–비과세급여)×4.5%

(210만원 – 10만원) × 4.5% = 9만원

(3) 건강보험 – (총급여–비과세급여) × 2.54% + [(총급여 – 비과세급여) × 2.54 %]×4.78%

❶ (210만원 – 10만원) × 2.54% = 50,800원(2008년 7월 1일 이전)

❷ (210만원 – 10만원) × 2.54% + [(210만원 – 10만원) × 2.54%] × 4.78% = 53,220원

(4) 고용보험 – (총급여 – 비과세급여)× 0.45%(2010년 적용 기준)

2백만원 × 0.45% = 9,000원(2009년까지는 210만원 × 0.45%)

급여	2,100,000 /	현금	1,922,990
		예수금	177,010

주 만일 급여를 급여봉투에 넣어 직접주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 현금계정대신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하며, 예수금도 그 항목별로 구분하는 경우 갑근세예수금. 주민세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 예수금, 고용보험 예수금으로 구분해서 분개를 하면 된다.

급여의 미지급시 분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달에 지급을 못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미지급급여로써 미지급비용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급여 210만원(비과세급여 10만원 포함)을 지급받고 공제대상가족 수가 1인인 직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급여	2,100,000 /	미지급비용	2,100,000

으로 처리한 후, 갑근세와 4대 보험(177,010원)을 다음달 10일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 준 경우

미수금	177,010 /	현금	177,010

으로 처리를 하며, 미지급급여를 이번 달 급여와 함께 지급시

미지급비용	2,100,000 /	보통예금	3,841,980
급여	2,100,000	미수금	177,010
		예수금	177,010

급여가불시 분개

급여의 가불이나 직원의 결혼식을 맞아 나중에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모아서 주는 경우 선급급여(=선급비용)로 처리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 210만원(비과세급여 10만원 포함)을 지급받고 공제대상가족 수가 1인인 직원에게 50만원을 가불해준 경우

선급급여	500,000 /	현금	500,000

으로 처리를 한 후 실제급여의 지급시

급여	2,100,000 /	현금	1,422,990
		선급급여	500,000
		예수금	177,010

급여압류시 분개

급여를 압류한 경우에는 이를 급여와 구분하기 위해서 압류급여 예수금 등으로 표시를 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송금시 동 압류급여 예수금을 소멸시켜주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 210만원(비과세급여 10만원 포함)을 지급받고 공제대상가족 수가 1인인 직원이 신용불량으로 카드사에 급여 중 100만원을 압류당한 경우 급여의 지급시점에는

급여	2,100,000 /	현금	913,480
		압류급여예수금	1,000,000
		예수금	177,010

으로 처리를 한 후 압류급여를 채권자에게 송금을 한 경우

압류급여예수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으로 처리한다.

급여 연말정산시 분개

연말정산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액은 회사에서 우선 종업원에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을 하거나 환급신청 후 환급을 받는다. 그리고 미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결과 작년도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200만원 2월분 급여가 1,000만원, 2월분 급여에 대한 예수금이 100만원 발생을 한 경우

급여	10,000,000 /	현금	11,000,000
미수금	2,000,000	예수금	1,000,000

으로 처리를 한 후 3월 10일 세금 납부시

예수금	1,000,000 /	미수금	1,000,000

처리하면 된다. 반면 예수금이 250만원인 경우

예수금	2,500,000 /	미수금	2,000,000
		현금	500,000

으로 처리를 한다.

참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환급한 경우

2월분 급여지급시 환급액 200만원을 미환급해준 경우

급여	10,000,000 /	현금	9,000,000
미수금	2,000,000	미지급금	2,000,000
		예수금	1,000,000

으로 처리를 한 후 3월 10일 세금 납부시

예수금	1,000,000 /	미수금	1,000,000

처리한다. 그 후 환급액을 환급해주는 때에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미지급금	2,000,000 /	현금	2,000,000

< 연말정산 관련 분개시 유의사항 >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나 미수금 산정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 회사전체의 연말정산 결과를 가지고 환급이냐 납부냐를 판단해야 하지 갑이라는 직원은 환급, 을이라는 직원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갑은 미수금으로 을은 추가징수액인 예수금으로 분개를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갑은 20만원의 환급이 발생을 했고, 을은 10만원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미수금 계정 10만원이 되는 것이지 미수금 20만원, 예수금 10만원으로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갑근세와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직원 갑근세액 및 4대보험을 회사에서 대납시에는 급여의 지급시 전액을 급여로 처리하고 예수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 후 갑근세 및 4대보험 납부시 회사대납액(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본다.)을 선급급여 처리 후 급여의 지급시 동 선급급여도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해서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어 1월 급여가 150만원인 직원의 4대보험 및 갑근세 125,880원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1월에는

급여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2월 10일 납부시

선급급여	125,880 /	보통예금	125,880

으로 처리를 하고 2월 급여지급시에는 1,500,000+125,880원을 기준으로 갑근세를 공제한다.(공제액 138,240원 가정)

급여	1,625,880 /	선급급여	125,880
		보통예금(또는 현금)	1,500,000

으로 처리한 후 3월 10일 납부시

선급급여	138,240 /	보통예금	138,240

처리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달 회계처리를 반복하면 된다.

급여의 반납 또는 삭감시 분개

예를 들어 직원의 급여 2,000,000원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반납한 경우

현금	2,000,000	/	자산수증이익	2,000,000

실무상 갑근세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 등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처리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급여 4백만원 중 2백만원을 반납한 경우라면

급여	4,000,000	/	자산수증이익	2,000,000
			현금	2,000,000

으로 처리를 한 경우 4백만원을 기준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해야 하며, 따라서 실무상 정확한 분개는 총급여 4백만원 부양가족 1인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금액을 계산하면 562,790원이 된다.

급여	4,000,000	/	자산수증이익	2,000,000
			현금	1,437,210
			예수금	562,790

반면 급여삭감으로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2,000,000	/	현금	2,000,000

으로 처리를 한 경우 20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따라서 실무상 정확한 분개는 총급여 2백만원 부양가족 1인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금액을 계산하면 177,010원이 된다.

급여	2,000,000	/	현금	1,822,990
			예수금	177,010

4 일용근로자 급여의 회계처리(잡급)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청소부나 임시 사무직의 일당은 잡급으로 처리한다.

잡급으로 처리가능 한 사례

가정주부 등으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아르바이트생 급여, 청소원 급여, 임시 사무보조원 급여

잡급의 회계처리 사례

아르바이트생 1명을 7일간 사용을 하고, 일당 3만원으로 21만원을 지급한 경우

잡급	210,000	/	현금	210,000

5 급여와 관련해서 주로 사용하는 장부

계속근로자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계좌이체내역서, 급여통장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계좌이체내역서, 급여통장

02

퇴직금의 회계처리

퇴직금 지급시 계정과목은 퇴직급여이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경우 우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부족액은 퇴직급여 처리한다.

퇴직금의 지급 후 장부정리시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한다.

퇴직급여란 영업기간 중 또는 영업연도말 임원 또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자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퇴사하는 임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설정해 둔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경우 동 충당금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부족잔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계정으로 처리한다.

1 퇴직급여의 회계처리 사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주)무역은 회계연도말 퇴직금추계액 200만원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퇴직급여	2,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퇴직금 지급시 분개

(주)무역은 영업부 직원 이운임씨의 퇴직으로 퇴직금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단, 퇴직급여충당급 2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다(퇴직소득세 5만원 가정).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	현금	3,950,000
퇴직급여	2,000,000		퇴직급여예수금	50,000

주 연도 중에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퇴직금으로 처리

퇴직금전환금(국민연금전환금)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근속기간 중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퇴직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퇴직금전환금이 10만원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	현금	3,850,000
퇴직급여	2,000,000		퇴직금전환금	100,000
			퇴직급여예수금	50,000

2 퇴직급여와 관련해 주로 사용하는 장부

퇴직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 명세서, 퇴직금계산서, 퇴직금산출내역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03

복리후생비의 회계처리

복리후생비 지출시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이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의해 복리후생비가 지출되는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 등을 말한다.

1 복리후생비의 구분

법정복리비

법정복리비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리비로서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한 국민연금갹출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복리시설비

복리시설비란 병원이나 학교, 식당, 사택, 기숙사 등 종업원을 위한 시설의 운용비 중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비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의 후생비

의료, 친목활동, 경조, 소모품, 식사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다음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본다.

❶ 의무실유지비
❷ 서클활동지원비
❸ 작업복 등과 소모품
❹ 학자금
❺ 정기건강진단비
❻ 경조사비
❼ 야근, 잔업, 휴일근무 등의 식사 제공비

복리후생비 지출의 내용	계정과목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급 여
복리시설의 취득	유형자산
복리시설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복리시설의 유지관리비	수선비, 세금과공과 등
복리시설의 관리인 인건비	급 여

2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 한 사례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임직원의 음료수 구입(커피 등)비용, 서클활동 지원비, 간식비(직원), 건강진단비, 직원 경조사비, 생수, 레크리에이션비용, 직원 망년회비용, 사복구입(피복비)비용, 임직원 선물비용, 직원 송년회비용, 임직원 식사비용, 야유회 경비, 약값, 위로금, 의무실유지비, 일 · 숙직비, 임직원 조의금, 주택보조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임직원 차대, 임직원 축의금, 회식비, 임직원 화환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학자금, 직원식당 운영비

직원 경조사

직원 경조사와 관련한 화환구입비나 조의금, 부조금 등의 지출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거래처에 대한 지급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직원 결혼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직원 회식비, 간식비

직원 회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나 회식 중 단란주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회식비로 보기가 어렵다. 직원 회식비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200,000	/	현금	200,000

건강보험료 회사부당액

10일 날 직원부담분 5만원과 회사부담분 5만원을 납부하였다.

예수금	50,000	/	현금	100,000
복리후생비	50,000			

고용보험료 회사부담액

급여지급시 직원부담분 2만원과 회사부담분 4만원을 선급비용과 상계하였다.

예수금	20,000	/	선급비용	60,000
복리후생비	40,000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비용

봄맞이 야유회를 가면서 야유회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다.

복리후생비	1,000,000	/	현금	1,000,000

주 직장체육행사를 시행하면서 각 종목별 우승자 및 팀별 우승팀에게 지급하기 위해 경품 등을 구입한 경우 적법 영수증 구비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 팀별로 현찰을 지급하고 이를 부서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팀원별은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면 된다.

직원의 병원치료비 및 위로금

작업도중 직원이 다쳐서 병원치료비 100만원과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	1,000,000	/	현금	1,300,000
잡손실	300,000			

주 임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고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나 임직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의료비 지원액은 갑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04

고용보험의 회계처리

고용보험료는 개산보험료 지급시 선급비용처리 한 후
결산시나 확정보험료 지급시 이를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개산보험료는 납부시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한 후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에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한 다음 회사부담금을 당해 연도 비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단,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해 보험료 확정신고시(다음해 3월 31일) 정산하기도 한다.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는 그 회계처리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직원 개인별로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활용) 관리해야 하며, 임금 지급시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종업원부담금은 보험료 확정시 정산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적이므로 분납시에도 분납금액 전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보험료 확정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고용보험료 징수금액과 종업원부담금 실제 납부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 징수분은 추가 징수하고, 초과징수 금액은 다음연도에 납부할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1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010년도 분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38만원에서 일시 납부 할인금액 6만 9천원을 차감한 1,311,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억 2천만원 : 통상 전년도 임금총액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138만원 : 추정임금(1억 2천만원)×보험요율(1.15%)

■ 일시납 할인금액 6만9천원 : 개산보험료(138만원) × 할인율(5%)

선급비용	1,380,000	/	보통예금	1,311,000
			잡이익	69,000

주 잡이익 : 일시 납부시 개산보험료의 5% 할인에 대한 이익

2010년 보험료 확정 및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

[2010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10년 확정보험료는 1,667,500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복리후생비	1,015,000	/	선급비용	1,015,000

주 복리후생비 : 2010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667,500 × 0.7/1.15)

[2010년 확정 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2010년 확정보험료는 1,667,500원이다. 2010년 고용보험료 과소납부금액 287,500원(1,667,500원 - 1,38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한편, 2010년도 고용보험료 중 매월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둔 직원부담금(예수금)을 선급비용과 대체하다.

예수금	652,500	/	선급비용	365,000
			보통예금	287,500

주 예수금 : 2010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1,667,500 × 0.45/1.15)

주 직원부담금을 직원으로부터 과소 징수하여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며, 과다징수한 금액은 환급처리하거나 당해연도 보험료로 납부한다.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667,500원에서 일시납 할인금액 83,375원을 차감한 1,584,120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4,500만원 : 통상 전년도 임금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1,667,500원 : 추정임금(14,500만원)×보험요율(1.15%)

■ 일시납 할인금액 83,375원 : 개산보험료(1,667,500원)×할인율(5%)

선급비용	1,667,500	/	보통예금	1,584,120
			잡이익	83,380

주 잡이익 : 일시납 개산보험료 5% 할인금액(83,375) + 단수차액(5)

2010년 보험료 확정 및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2010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2010년 실제 지급한

임금은 1억원이며,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115만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복리후생비	700,000	/	선급비용	700,000

주 복리후생비 : 2010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150,000 × 0.7/1.15)

[2010년 보험료 확정]

2010년 3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억원이며, 이에 대한 2010년 확정보험료는 115만원이다. 따라서 2010년도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 23만원(138만원 - 115만원)은 2010년도 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예수금	450,000	/	선급비용	680,000
미수금	230,000			

주 예수금 : 2010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 (115만원×0.45/1.15)
주 미수금 : 2010년도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으로 환급 또는 충당할 금액
주 2010년도 고용보험료 중 직원부담금은 매 월 징수하여 두었다가 보험료 납부 시 반제하며, 부족 징수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과다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직원에게 돌려준다.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15만원에서 전년도 보험료 확정결과 2010년도 분 초과납부금액 23만원을 2010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일시납 할인금액 57,500원을 공제한 잔액 862,5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개산보험료 115만원 : 추정임금(1억원) × 보험요율(1.15%)

예수금	1,150,000	/	보통예금	862,500
			미수금	230,000
			잡이익	57,500

주 선급비용 : 2010년도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주 미수금 : 2010년도 개산보험료 납부금액 중 2010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한 금액
주 잡이익 : 일시 납부시 개산보험료의 5% 할인에 대한 이익

2 개산보험료 분납

2010년도 개산보험료 분납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38만원을 4회 분납하기로 신고하고, 1회분 345,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통상 전년도 임금) 12,000만원에 대한 개산보험료 138만원

■ 분납금액 345,000원 : 개산보험료(138만원) ÷ 4

선급비용	345,000	/	보통예금	345,000

주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은 급여 지급시 징수하여 두었다가 확정시 대체처리 한다.

2010년 보험료 확정 및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2010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만원이며, 이에 대한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1,667,500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복리후생비	1,015,000	/	선급비용	1,015,000

주 복리후생비 : 2010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667,500 × 0.7/1.15)

[2010년 확정 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2010년 실제 지급 임금은 14,500만원이며, 2010년 확정보험료는 1,667,500원이다. 2010년 고용보험료 과소납부금액 287,500원(1,667,500원 - 1,38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한편, 2010년도 고용보험료 중 매월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둔 직원부담금(예수금)은 선급비용과 대체하다.

예수금	652,500	/	선급비용	365,000
			보통예금	287,500

주 예수금 : 2010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1,667,500 × 0.45/1.15)

■ 직원부터 징수한 예수금은 고용보험료 분납시 대체처리 해야 하나 분납시 납부금액을 전액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고용보험료 확정시 일괄하여 대체처리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적이다. (예시 사례는 이 방법에 의함)

■ 직원부담금을 직원으로부터 과소 징수하여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며, 과다 징수한 금액은 환급처리하거나 당해연도 납부할 고용보험료와 상계처리 한다.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667,5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하고, 1회 분납금액 416,875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보통예금에서 인출 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4,500만원 : 통상 전년도 임금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1,667,500원 : 추정임금(145,000,000원) × 보험요율(1.15%)

■ 1회분 보험료 416,875원 : 개산보험료(1,667,500원) ÷ 4

선급비용	416,875	/	보통예금	416,870
			잡이익	5

주 선급비용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금액 * 잡이익 : 단수차액(5)

2010년 보험료 확정 및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2010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실제 지급 임금은 1억원이며,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115만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복리후생비	700,000	/	선급비용	700,000

주 복리후생비 : 2010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150,000 × 0.7/1.15)

2010년 보험료 확정

2010년 3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억원이며, 이에 대한 2010년 확정보험료는 115만원이다. 따라서 2010년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 23만원은 2010년도 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 과다납부금액 = 1,380,000원 - 1,150,000원

예수금	450,000	/	선급비용	680,000
미수금	230,000			

주 예수금 : 2010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 (1,150,000 × 0.45/1.15)

주 미수금 : 2010년도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으로 환급 또는 충당할 금액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150,000원에서 전년도 보험료 확정결과 2010년도 분 초과납부금액 230,000원을 2010년 1회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 57,5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00,000,000원 : 통상 전년도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1,150,000원 : 추정임금(100,000,000원) × 보험요율(1.15%)

■ 1회분 개산보험료 287,500 : 개산보험료(1,150,000원) ÷ 4

선급비용	287,500	/	보통예금	57,500
			미수금	230,000

주 선급비용 : 2010년도 개산보험료 분납금액

주 미수금 : 2010년도 개산보험료 초과 납부금액

05

산재보험의 회계처리

산재보험료는 개산보험료 지급시 선급비용처리 한 후 결산시나 확정보험료 지급시 이를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고용보험과 같이 복잡하지 않다. 산재보험료는 그 지급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결산 시점에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면 된다. 단,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해 보험료 확정신고시(다음해 3월 31일) 정산하기도 한다.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5).

1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010년도 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010년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40만원에서 일시납부 할인금액 12만원을 차감한 228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억 2천만원 : 통상 전년도 임금총액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40만원 : 추정임금(1억 2천만원)×보험요율(20/1,000)
-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해당연도 업종별 보험요율표에 의한다.

■ 일시납 할인금액 120,000원 : 보험료(240만원) × 할인율(5%)

선급비용	2,400,000	/	보통예금	2,280,000
			잡이익	120,000

주 선급비용 :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금액

주 잡이익 : 일시 납부시 개산보험료의 5% 할인에 대한 이익

2010년 보험료 확정 및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2010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민원이며, 이에 대한 2010년 확정보험료는 290만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과소납부한 금액 50만원(290만원 - 240만원)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다.

➜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바 산재보험 확정시 복리후생비로 대체처리한다.

복리후생비	2,900,000	/	선급비용	2,400,000
			미지급비용	500,000

[2010년도 확정 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2009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민원이며,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290만원이다.

따라서 2010년 과소납부금액 50만원(290만원 - 24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비용	500,000	/	보통예금	500,000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900,000원에서 일시납 할인액 145,000원을 차감한 2,755,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4,500민원 : 통상 전년도 임금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90만원 : 추정임금(14,500민원)×보험요율(20/1,000)

■ 일시납 할인금액 145,000원 : 개산보험료(290만원) × 할인율(5%)

선급비용	2,900,000	/	보통예금	2,755,000
			잡이익	145,000

주 잡이익 : 일시납 개산보험료 5% 할인금액

2010년 보험료 확정 및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2010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억원이며, 이에 대한 2010년 확정보험료는 200만원이다.

복리후생비	2,000,000	/	선급비용	2,000,000

[2010년 보험료 확정]

2010년 3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억원이며, 이에 대한 2010년 확정보험료는 200만원이다. 따라서 2010년 산재보험 과다납부금액 40만원은 차년도 납부할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미수금	400,000	/	선급비용	400,000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00만원에서 전년도 보험료 확정결과 2010년도 분 초과납부금액 40만원을 2010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 16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억원 : 통상 전년도 임금금액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00만원 : 추정임금(10억원) × 보험요율(20/1,000)

선급비용	2,000,000	/	보통예금	1,600,000
			미수금	400,000

주 미수금 : 2010년도 개산보험료 초과납부금액 중 2010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한 금액

2 개산보험료 분납

2010년도 개산보험료 분납

[개산보험료 분납]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40만원을 4회 분납하기로 신고하고, 1회분 6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통상 전년도 임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개산보험료 240만원
- 1회분 보험료 600,000원 : 2,400,000 ÷ 4

선급비용	600,000	/	보통예금	600,000

[개산보험료 분납]

2010년 5월 15일 2회분 분납보험료 6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선급비용	600,000	/	보통예금	600,000

2010년 보험료 확정 및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2010년 보험료 확정]

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억 4,500만원이며, 이에 대한 2010년 확정보험료는 290만원이다. 보험료 확정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고, 추가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다.

복리후생비	2,900,000	/	선급비용	2,400,000
			미지급비용	500,000

[2010년도 확정 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2010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억 4,500만원이며,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290만원이다. 따라서 2010

년 과소납부금액 50만원(290만원 - 24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비용	500,000	/	보통예금	500,000

[2010년 개산보험료 1회분 분납]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900,0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하고 1회 분납금액 725,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억 4,500만원 : 통상 전년도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90만원 : 추정임금(억 4,500만원)×보험요율(20/1,000)
- 1회분 보험료 725,000원 : 290만원 ÷ 4

선급비용	725,000	/	보통예금	725,000

2010년 보험료 확정 및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2010년 보험료 확정]

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0억원이며,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200만원이다.

복리후생비	2,000,000	/	선급비용	2,000,000

[2010년 보험료 확정]

2010년 3월 31일 2010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억원이며,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200만원이다. 따라서 2010년 산재보험 과다납부금액 40만원은 2010년도 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미수금	400,000	/	선급비용	400,000

[2010년 개산보험료 납부]

2010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000,0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하다. 한편, 전년도 보험료 확정결과 2010년도 초과납부금액 40만원을 2010년도 1회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 1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억원 : 통상 전년도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00만원 : 추정임금(10억원) × 보험요율(20/1,000)
- 1회분 개산보험료 50만원 : 개산보험료(200만원) ÷ 4

선급비용	500,000	/	보통예금	100,000
			미수금	400,000

주 선급비용 : 2010년도 개산보험료 분납금액
주 미수금 : 2010년도 개산보험료 초과 납부금액

[개산보험료 분납]

2010년 5월 15일 2회분 분납보험료 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선급비용	500,000	/	보통예금	500,000

주 선급비용 : 2010년도 개산보험료 분납금액

06

연봉제하에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

퇴직금을 매월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매달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동 가지급금 전액을 퇴직급여 계정에 대체한다.

퇴직금이란 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연봉제의 경우는 매년 계약으로 1년분 한꺼번에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제 직원의 퇴직금 명목이라도 매월 단위로 분할지급 되는 퇴직금은 급여지급정산관계상으로는 퇴직금으로 분류된다 해도 세무상으로는 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며, 매월 분할지급부분은 급여로 세무처리하지 않는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즉 ❶ 연봉제 직원에 대해 퇴직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만 1년 단위로 한번(12개월 만근 마지막 날)에 지급되며, ❷ 매월분할(혹은 만 1년에 한번 아니면)방식으로 지급되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이 원칙이며, 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도 피하고 싶다면 대여금,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면서, 만 1년 단위로 가지급처리된 금액을 합하여 퇴직금으로 계정대체분개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연봉 1,32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 경우

❶ 매월지급(11개월 동안 같음, 갑근세 등 예수금 분개 생략)

급여	1,000,000	/	현금	1,100,000
가지급금	100,000			

❷ 12월 급여 지급

급여	1,000,000	/	현금	1,100,000
가지급금	100,000			

❸ 연말 연봉계약 종료시

퇴직급여	1,200,000	/	현금	1,200,000

주 100,000원×12개월

❹ 인정이자 분개

미수이자	99,000	/	현금	99,000

주 기존 11개월분 가지급금 1,100만의 인정이자 해당 계산액이다.